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912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겨레(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8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